

	학생 지도교수제 운영규정	문서번호	3-4-12		
		제정일	2012. 12. 01.		
		개정일	2020. 11. 01.		
		페이지	1/3	관리 부서	학생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학생지도교수제(이하 “지도교수제”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종류) 지도교수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멘토지도교수제
2. 동아리지도교수제
3. 평생지도교수제

제3조(멘토지도교수제) ① 멘토지도교수는 학년 초 혹은 학기 초 학생처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며, 지도교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.

② 멘토지도교수는 학생의 대학생활, 학업,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지도를 하여야 하며,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는 특별지도를 하여야 한다.

③ 멘토지도교수는 졸업생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를 하여야 한다.

제4조(동아리지도교수제) ① 동아리라 함은 대학에 등록된 동아리와 학생자치활동기관을 말하며, 동아리지도교수는 학년 초 혹은 학기 초 학생처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며, 지도교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.

② 동아리지도교수는 2개 이상의 동아리를 담당할 수 없다. 단,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경우는 이와 다르다.

③ 동아리지도교수의 임기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.

제5조(평생지도교수제) ① 평생지도교수는 학생처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 ② 평생지도교수는 졸업생의 진로, 취업, 학업, 진학, 유학, 직장생활 및 기타에 관한 지도를 한다.

③ 평생지도교수의 임기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.

제6조(지도방법) ① 지도교수는 개인 또는 집단상담의 형태로 면담 지도하며,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지도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.

② 멘토지도교수는 학기 별 1회 이상의 학생개인별 상담과 학기 별 총 3회 이상 지도교수와의 상담의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단, 지도시 1회 이상의 '진로' 분야의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지도교수는 연 1회 이상 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.

	학생 지도교수제 운영규정	문서번호	3-4-12		
		제정일	2012. 12. 01.		
		개정일	2020. 11. 01.		
		페이지	2/3	관리 부서	학생처

④ 동아리지도교수는 해당 동아리 혹은 학생자치활동기관의 연간 운영계획에 대해 파악하고 건전한 학생활동 및 학풍을 조장하여야 한다.

⑤ 평생지도교수는 졸업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상담 및 지도를 할 수 있다.

제7조(지도자료 제출) 멘토지도교수와 동아리지도교수, 평생지도교수는 학생지도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학기 단위로 학생지도상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지도결과 보고 및 활용) ① 학생처장은 총장에게 지도교수의 학생지도 결과를 보고하고, 총장은 지도교수의 학생지도에 필요한 행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결과를 필요한 경우 차기년도 학생지원서비스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9조(기타)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	학생 지도교수제 운영규정	문서번호	3-4-12		
		제정일	2012. 12. 01.		
		개정일	2020. 11. 01.		
		페이지	3/3	관리 부서	학생처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